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)

가. 제안이유

-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통일함으로써 자치구 간 납세자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고충민원의 정의(안 제2조)
-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명시(안 제3조)
-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(안 제5조와 제6조)

-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(안 제8조)
- 고충민원의 신청 및 권리보호요청의 신청(안 제9조와 제17조)
-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(안 제11조)
-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및 세무조사 연기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
(안 제19조부터 제2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 납세자 보호 조례 관련하여 개정 권고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
- 자치구별 납세자보호 관련 조례가 상이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.
-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
-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, 업무 처리 방법 등 우리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마련함으로써 향후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면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